

의안번호	2219404
의 퇴 인	박지원의원
회 답 일	2026.7.6.
추계번호	26D2980

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 (특별재심)	법 제7조(찬양·고무 등) 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「형사소송법」 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부칙 제2조 (반공법 위반 확정판결에 관한 특례)	1980.12.31 폐지된 「반공법」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찬양·고무 등 죄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안 제7조의2의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 (특별재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부칙 제2조 (반공법 위반 확정판결에 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국가보안법」 및 舊 「반공법」의 찬양·고무 등 죄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「형사소송법」상 재심사유¹⁾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. 이에 따라 특별재심 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의 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경우 특별재심대상자는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 발생
- 그러나 「국가보안법」 및 舊 「반공법」의 찬양·고무등 유죄 확정 판결자 중, 개정안에 따른 특별재심 청구자 수, 그 중 무죄 선고 건수, 그리고 재심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당사자의 재심 청구 의사,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,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장래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「형사소송법」 제420조(재심이유)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1.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
2.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, 감정,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
3. 무고(誣告)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
4.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
5.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,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
6. 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
7. 원판결,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,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. 다만,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광근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광근	02-6788-4831	kklee@nabo.go.kr